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근로소득세 어떻게 바뀌나

과표 1,200만원 이하 세율 2%P 내려

월 200만원 근로자 연 5만7천원 줄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거치 기간 없애

내년부터 월급 300만원의 근로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매월 4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자비용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월 300만원 근로자 연간 27만원 덜내=25일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를 통해 제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내년 월급 300만원의 소득자(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는 매월 3만970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한다. 이는 올해의 5만3천780원에 비해 42.4% 줄어드는 금액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7만3천720원이 줄어든다.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지게 된다.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다. 같은 조건이면서 월급 200만원의 근로자는 원천징수 금액이 매월 5천430원이다. 이는 현행 1만240원에 비해 47% 줄어든 금액이다. 월급 400만원의 근로자는 매월 4만2천40원을 덜 내게 돼 감소율이 22.5%다. 월급 500만원의 근로자는 5만540원을 덜 징수당해 감소율이 15.3%다. 재정부가 작성한 간이세액표에는 소득세율 인하나 근로소득공제 축소, 기본공제 인상이 반영됐으며 교육비·의료비 공제항목도 확대 등은 빠져있다.

◇근로소득세 어떻게 바뀌나=내년부터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8%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17%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16%, 2010년에 15%로 향후 2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내려간다. 8천800만원 이하 구간도 현행 26%인 세율이 내년 25%, 내후년에 24%로 1%포인트

씩씩 인하된다.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 30%로 유지되고 2010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는 내년에도 축소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100%에서 80%로 내려간다.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비 공제항목의 경우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고생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항목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차입금 공제대상 확대=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해준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소

월급액(만원)	현행(천원)	개정(천원)	변동(천원)	변동률(%)
200	10,240	5,430	-4,810	-47%
300	30,780	17,350	-13,430	-44%
400	42,400	28,160	-14,240	-34%
500	55,400	39,860	-15,540	-28%

득공제를 적용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1인 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줄기로 했다.

농어민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농림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등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월급 300만원의 근로자의 내년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월 2만2천여원(42.4%), 연 27만여원이 감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기업 경조사비 1회당 20만원 확대
손비처리 미술품 300만원까지 인정

■ 기업 세제 지원책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경조사비를 1회당 20만원, 손비처리 가능 미술품 액수를 300만원까지 인정하는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비을 처리해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조사비 20만원까지 인정=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천 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 처리되는 미술품 액수는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액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은 최근 미술품 시장의 가격 인상을 감안할 때 기업이 100만 원 이하 상품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된다. 기업승계 요건이 기존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되도록 바뀐다.

◇해외 자원투자 컨소시엄형도 지원=정부는 내년부터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광업권, 조

광권의 직접 취득 방식과 달리 세액 공제 대상에 컨소시엄형도 포함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 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요건은 연구개발비가 기존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만 달러 이상, 내국인 투자의 경우 5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소득세 손비 처리 확대=기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그 행사비용을 모회사가 떠안으면 손비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보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기업 판정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매출액 100억 원을 초과하면 소기업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등록세 감면분 가운데 농특세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고향 주택’ 취득 2주택자 양도세 면제

■ 과세표준·혜택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정해졌다. 또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된다.

◇중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중부세에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율이 종전의 과표적용을 대신하게 됐다.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 기준금액(6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다만 별도합산과세(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엔 70%, 2010년 75%, 2011년 80%로 단계적으로 80%까지 오른다. 정부는 중부세법이 정한대로 이 비율을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감안해 적정 세 부담이 되도록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부세 합산대상 제외요건 출몰이 완화=중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지방소재 1주택의 범

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또 중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6개월 이내 미임대에서 2년 이내 미임대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건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부세 합산에서 빠진다.

비수도권에 한해 중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매입임대주택의 요

중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로

미용·성형수술비 소득공제 1년 연장

건을 임대호수 5호에서 1호 이상으로, 면적 85㎡에서 149㎡이하로,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도 신설됐다. 지난 11월3일 현재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미분양인 주택과, 11월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또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 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빠진다.

◇고향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고향주택의 범위도 정해졌다.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市)로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가 대상이다. 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다.

◇비사업용 토지 종과제도 개선=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30%)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공익사업

용 사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지만 5년 이상만 소유하면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 공제 내년까지=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추가했다.

SAFA WERVE CHAIR

조이케겔 SF-01

제품문의 1688-1471